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77
------	------

제출일자 : 2023. 9. 5.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3)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2023. 7. 27. ~ 2023. 8. 16.) 결과: 의견반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폐지(현행 제2조의2 삭제)

나.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제5호, 제4조 제1호 및 제3호, 현행 제10조제2항 삭제)

다.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수정(안 제10조제1항)

라. 관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제5호 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18조의6”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영 제3조의2”를 “영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18조의6”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복지가족국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자활주거팀장”을 “자활기금 담당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 ----- ----- ----- ----- -----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 4. (생 략)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 12. (생 략)	제3조(기금의 용도) -----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8조의6----- ----- 6. ~ 12.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

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
2. (생 략)
3.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4. ~ 6. (생 략)

제10조(기금관리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복지가족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주거팀장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4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1. ----- 영 제3조-----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8조의6-----

4. ~ 6.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관리자) ① -----
----- 복지지원
과장-----
자활기금 담당 팀장--.

<삭 제>

제14조(관계규정 준용) -----
-----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지원과 자활주거팀 문수현
연락처	2627 - 1986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01.12.24 조례 제34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13.]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2.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지원신청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대여)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의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고, 상환기간, 대여한도와 연체이자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15%를 넘지 않도록 한다.

관계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6(고용촉진)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4. 12. 3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1. 6. 7., 2014. 12. 30., 2021. 12. 21.>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6. 7., 2014. 12. 30.>

[본조신설 2006. 12. 28.]

[제목개정 2014. 12. 30.]

[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21. 7. 27.>]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 1. 15.>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1로 이동 <2021. 7. 2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4. 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 4. 2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